

환 | 경 | 법 | 규

환경부 공고 제2008-321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년 11월 24일 / 환경부장관

1. 제안이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로 통합·정비(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하면서 「환경정책기본법」 중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조문이 새로운 제정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흐트러진 「환경정책기본법」의 조문체계를 일괄 정비하는 한편,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출입·검사)을 실시하는 때에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중첩적인 지도·점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도록 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불편을 최고화하고 지도·점검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또한, 현행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적 시책과 환경개선사업의 재원확보·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일의 법률에서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복잡한 환경법률의 체계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2개 이상 설치된 사업장에 대한 통합적인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 신설)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적법하게 가동·관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관청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출입·검사·보고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개별 법률에 따라 종류가 다른 배출시설이 2개 이상 설치된 사업장은 중첩적인 지도·점검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또한, 감독관청의 지도·점검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과 배출시설의 관리상태에 따라 지도·점검을 선택적이고 집중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별 법률에 따라 2개 이상의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통합하여 동시에 시행도록 하고, 지도·점검의 결과 및 행정처분의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배출시설의 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의 방법을 다른 사업장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업자로 하여금 배출시설에 대한 자율적인 관리를 유도하는 등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4조부터 제52조까지)

(1)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적 시책에 관한 사항과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단일의 법률체계에서 통합적으로 정비하여 환경법률 체계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2)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함.

(3) 환경법률의 체계를 통합·정비함으로써 국민들이 환경법률 체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것으로 기대함.

다. 환경기준의 개념정의를 신설(안 제3조제8호)하고, 흐트러진 법률의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함

환경법규

환경부 공고 제2008-34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2008년 12월 19일 /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연료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사항 등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휘발유 제조기준 중 산소함량 하한치 규정 삭제(제115조 별표33)

(1) 산소함량 하한치 규정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정으로 규제의 실효성이 없어 합리적으로 조정(삭제)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

나. 겨울철 혹한기에 공급되는 경유의 세탄가 조정(제115조 별표33)

(1) 겨울철 혹한기에 공급되는 경유의 세탄가가 52이상이 될 경우에는 유동점이 저하되어 운행 중 차량정지, 시동불량 등의 우려가 있어 합리적으로 조정

(2) 겨울철 혹한기에 공급하는 경유의 세탄가를 현행 52에서 48을 적용하고, 공급하기 7일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환경부공고 제2008-344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년 12월 22일 /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법적 오염토양 정화기간을 총 4년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공부지의 오염토양 정화기준 적용 범위 확대 및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부실 오염정화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오염토양 정화기간을 최대 4년 보장 및 오염정화 곤란시 반출정화 허용(안 제5조의2, 제8조의3, 제9조의2)(별표4)

나.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공공부지의 토양오염을 향후 토지이용용도에 적합한 기준으로 정화토록 규정(안 제10조)

다. 토양오염도검사를 5년·10년·15년이 되는 해에 받도록 조정하고, 매년 1회 받는 설치 후 15년이 지난 저장시설은 매 3년마다 받도록 완화(안 제8조, 별표 4)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n.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